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02,818,162	21,084,545
일반회계	606,629,626	18,198,889
특별회계	96,188,536	2,885,656
공기업특별회계	74,924,468	2,247,73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2,365,814	970,97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42,558,654	1,276,760
기타특별회계	21,264,068	637,922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617,319	48,520
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	4,487,260	134,618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5,962,000	178,860
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	6,683,050	200,492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,836,189	55,086
지하수특별회계	678,250	20,34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431,737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